

2015.1.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·공시

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된 2015.1.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·공시 합니다

2015년 7월 23일
성 북 구 청 장(인)

1. 개별공시지가 개요

- 가. 공시(가격)기준일 : 2015년 1월 1일
- 나. 개별토지단위면적 : m^2
- 다. 조정 필지수 : 19필지
- 라. 공 고 기 간 : 2015. 7. 23 ~ 8. 24

2. 공시사항

- 가. 이의신청 토지 중 조정 결정된 지가(별첨 조정내역서 참조)
- 나. 지번별 m^2 당 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

3. 권리구제

이의신청 후 조정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4. 기타문의사항 : 구청 지적과 (전화 : 2241- 4643)

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내역서

[2015. 1. 1기준]

조정 19필지(상향 18필, 하향1필)

순 번	토 지 소 재 지	개별공시지가(원/㎡)		비 고
		결정지가	조정지가	
1	돈암동 413-148	1,650,000	1,500,000	하향
2	길음동 21-131	3,713,000	3,840,000	상향
3	길음동 21-135	3,713,000	3,880,000	상향
4	길음동 508-8	3,713,000	3,880,000	상향
5	길음동 508-43	2,061,000	2,114,000	상향
6	길음동 509-23	2,083,000	2,114,000	상향
7	길음동 914-44	2,842,000	2,990,000	상향
8	길음동 914-45	2,842,000	2,990,000	상향
9	길음동 976	2,435,000	2,459,000	상향
10	길음동 1062-1	2,400,000	2,415,000	상향
11	장위동 42-36	3,900,000	3,910,000	상향
12	장위동 66-265	2,541,000	2,565,000	상향
13	장위동 74-32	3,200,000	3,230,000	상향
14	장위동 74-292	3,306,000	3,320,000	상향
15	장위동 74-295	3,306,000	3,320,000	상향
16	장위동 74-296	3,306,000	3,320,000	상향
17	장위동 99	2,820,000	2,840,000	상향
18	장위동 115-65	2,061,000	2,090,000	상향
19	장위동 203-16	2,195,000	2,250,000	상향